

2006. 1. 27.(금)
제120회임시회제4차본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 천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순 서

□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총	평	1
2. 감사개요	4
가. 감사목적	4
나. 감사기간	4
다. 감사대상	4
라. 감사대상사무	4
마. 감사방법	5
3. 감사결과	5
가. 지적·건의·수범사례 총괄	5
나. 행정사무감사 지적및조치 요구사항	6
4. 행정사항	4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총 평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로는 시정에 대한 기획·조정, 경제, 조직관리, 홍보, 복지, 세정, 회계, 민원업무 등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오지개발 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자치센터운영, 제천바이오밸리 및 각종 사업장과 읍면동에 대하여는 소속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 간에 걸쳐 현장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부터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동안 실시하는 감사로 회의식감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현장확인시 동행하여 안내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순조롭게 감사가 마무리 되었음.

금번 감사는 제4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 파악과, 의원별 업무분장, 의원별 실과담당제 실시등을 통하여 심도있고 책임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잘못 시행한 사업이나, 시책등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는가 하면,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시에 도출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또는 시정 요구하는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5개항목 중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항목에서 1,068백만원의 패널티와 기준재정수입액 3개항목에서 817백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인센티브는 2개항목에서 270백만원을 받는데 그치는 등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항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청풍명월 국제하키장(2004.9.24.준공)의 본부석 크랙으로 인하여 지하 락카룸에 누수가 발생, 텍스 접착불량으로 인한 탈착, 벽면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05년도에도 지적인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10. 15.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고 10월말에서 11월까지 심의, 확정 및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하며, 지방의회 보고는 계획 작성 후 의회에 제출 출석보고 또는 서면 보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2005. 11. 23. 예산안 제출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당일인 2005. 11. 25.까지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 민간인 해외여행은 자매결연 대상국방문, 국제행사 참석, 선진지 견학등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제천시외 홍보와 우호교류, 현지 기업인과의 투자협의 등을 통하여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인 해외여행에 따른 명확한 대상자 선정기준 없이 담당부서 임의로 민간인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우수사례로는 시립도서관 업무중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천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근무상황부 관리, 종합일지 작성, 자금관리, 지출서류작성, 도서구입, 카드 사용방법 교육등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아닌 세밀하고 실질적인 업무지도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추진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개선토록 조치하는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21건, 읍면동감사 지적·건의·권고사항 15건, 우수사례 1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읍면동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실효성,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

2. 감사개요

가.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상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나. 감사기간

- 2005. 11. 29. ~ 12. 5. (7일간)

다. 감사대상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 및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 분 청 : 2실, 7과
 - 직속 기관 : 1직속기관, 2사업소
 - 읍·면·동 : 1읍 7면 9동

라.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 11. 1.부터 2005. 10. 31일까지 집행된 사무

마. 감사방법

- 제출서류의 분석·검토
- 현 장 확 인
-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질의·답변 등

3. 감사결과

가. 지적·건의·수범사례 총괄

소관 과·사업소별	계	지적처리요구	읍면동감사 (이재건의등)	우수사례
합 계	37	21	15	1
과사업소공통	2	2	-	-
기획감사실	7	3	4	-
투자통상실	2	1	1	-
자치행정과	5	3	2	-
주민지원과	4	3	1	-
생활민원과	-	-	-	-
홍보체육과	1	1	-	-
복지사업과	4	1	3	-
세정과	2	2	-	-
회계과	2	1	1	-
보건소	1	1	-	-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	2	-	-
시립도서관	3	1	1	1
읍면동	2	-	2	-

나.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 총 21 건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부서																												
공통	위원회운영	<p>○위원회운영 부적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실과</th> <th style="width: 40%;">위원회명</th> <th style="width: 10%;">위원수</th> <th style="width: 40%;">운영실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획</td> <td>규제개혁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04-0회, 05-0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획</td> <td>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04-0회, 05-0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획</td> <td>공직자윤리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04-0회, 05-0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복지</td> <td>지방청소년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정</td> <td>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04-0회, 05-0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건</td> <td>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없음</td> </tr> </tbody> </table> <p>•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의를 1년동안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등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p>	실과	위원회명	위원수	운영실적	기획	규제개혁위원회	12	04-0회, 05-0회	기획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9	04-0회, 05-0회	기획	공직자윤리위원회	5	04-0회, 05-0회	복지	지방청소년위원회	15	없음	세정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7	04-0회, 05-0회	보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5	없음	<p>○1년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유사위원회와 통·폐합 또는 폐지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p>	<p>기획감사실, 복지사업과, 세정과, 보건소</p>
실과	위원회명	위원수	운영실적																													
기획	규제개혁위원회	12	04-0회, 05-0회																													
기획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9	04-0회, 05-0회																													
기획	공직자윤리위원회	5	04-0회, 05-0회																													
복지	지방청소년위원회	15	없음																													
세정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7	04-0회, 05-0회																													
보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5	없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부서																																							
공통 (기획 감사실)	지방교부세	<p>○2005년도 지방교부세</p> <p><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6">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th> </tr> <tr> <th>소계(A)</th> <th>지방공무원정원운영</th> <th>비정규근인력운영</th> <th>경상경비절감운영</th> <th>상수도요금현실화운영</th> <th>지방청사(면적)관리운영</th> </tr> </thead> <tbody> <tr> <td>산출내역</td> <td>△1,068</td> <td>△125</td> <td>△390</td> <td>△75</td> <td>△144</td> <td>△334</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소계(B)</th> <th colspan="5">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th> <th rowspan="2">인센티브총반영액(A-B)</th> </tr> <tr> <th>지방세징수율</th> <th>주민개입권등합</th> <th>과표현실화</th> <th>지방세채납액축소액</th> <th>지방세채납액축소액</th> </tr> </thead> <tbody> <tr> <td>547</td> <td>△105</td> <td>△165</td> <td>16</td> <td>134</td> <td>667</td> <td>△1,615</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소계(A)	지방공무원정원운영	비정규근인력운영	경상경비절감운영	상수도요금현실화운영	지방청사(면적)관리운영	산출내역	△1,068	△125	△390	△75	△144	△334	소계(B)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인센티브총반영액(A-B)	지방세징수율	주민개입권등합	과표현실화	지방세채납액축소액	지방세채납액축소액	547	△105	△165	16	134	667	△1,615	<p>○200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는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패널티는 최소화 되도록 각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람.</p>	해당실과 (기획 감사실, 자치행정과,세 정과,회 계과,수도사업 소)
		구분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소계(A)	지방공무원정원운영	비정규근인력운영	경상경비절감운영	상수도요금현실화운영	지방청사(면적)관리운영																																			
		산출내역	△1,068	△125	△390	△75	△144	△334																																			
소계(B)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인센티브총반영액(A-B)																																					
	지방세징수율	주민개입권등합	과표현실화	지방세채납액축소액	지방세채납액축소액																																						
547	△105	△165	16	134	667	△1,61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5개항목중,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항목에서 1,068백만원의 패널티와 기준재정수입액 3개항목에서 817백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인센티브는 2개항목에 270백만원을 받는데 그치고 있는등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항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적 사항	조치요구사항	처리 부서
기획 감사실	중기지방재정 계획	<p>○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보고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에도 지적인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7. 15한 자치단체별 단위사업조서를 입력하고 10. 15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고 10월말에서 11월까지 심의, 확정 및 의회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p>○지방재정계획의 체계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으로 운영되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수립 지방재정의 기틀로 활용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예산 확보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함으로 단계별(일정별) 추진계획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p>	기획 감사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 부서
		<p>기초로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보고는 계획 작성후 의회에 제출 출석보고 또는 서면보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2005. 11. 23. 예산안 제출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 하였으며 감사당일인 '05. 11. 25 까지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음.</p>	<p>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융자심사와 함께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함께 의회에 보고토록 하시기 바람.</p>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서					
기 획 감사실	대학생 배낭여행 및 장학금제도	<p>○대학생 해외배낭연수 및 장학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1. 대학생 배낭여행(계) =30,000천원</td> </tr> <tr> <td> ◦ 유 럽 10명×1,500천원 =15,000천원</td> </tr> <tr> <td> ◦ 동남아 20명× 750천원 =15,000천원</td> </tr> <tr> <td>2. 장학금 지급(계) =50,000천원</td> </tr> <tr> <td> ◦ 3개대학 100명×500천원 =50,000천원</td> </tr> </table> <p>• 대학생 배낭여행은 유럽 1,500천원, 동남아 750천원을 지원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자치단체에서 대학생에 주는 장학금이 1인당 500천원은 타 장학금에 비하여 약소함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p>	1. 대학생 배낭여행(계) =30,000천원	◦ 유 럽 10명×1,500천원 =15,000천원	◦ 동남아 20명× 750천원 =15,000천원	2. 장학금 지급(계) =50,000천원	◦ 3개대학 100명×500천원 =50,000천원	<p>○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배낭여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선발기준을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한정할 필요에 대하여 재검토 하시기 바람직하며, 기능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도 검토하시기 바람.</p>	기 획 감사실
1. 대학생 배낭여행(계) =30,000천원									
◦ 유 럽 10명×1,500천원 =15,000천원									
◦ 동남아 20명× 750천원 =15,000천원									
2. 장학금 지급(계) =50,000천원									
◦ 3개대학 100명×500천원 =50,000천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 부서
기획 감사실	중기지방재정 계획	<p>○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5개년 동안 투자되는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감일 현재 사업비가 5억원이 넘는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영상위원회운영, 음악영화제,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예산편성현황” 수감자료에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및 수감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였음. 	<p>○5개년동안 투자되는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자료 작성시 수감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p>	기획 감사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 서
자 치 행정과	민간인 해외여행	<p>○민간인해외여행 대상자 선정기준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 해외여행은 자매결연 대상국 방문, 국제행사 참석, 선진지 견학등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재천시의 홍보와 우호교류, 현지 기업인과의 투자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외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인 해외여행에 따른 명확한 대상자 선정기준 없이 담당부서 임의로 민간인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p>○민간인 해외여행에 따른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또는 관련 규정등을 마련하여 시행 하시기 바람.</p>	자 치 행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 부서
자치 행정과	민간위탁 조례개정	<p>○재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대상사무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 하도록 하고 있으나, <p>민간위탁 처리지침에 의하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9명으로 구성하되 지방의회, 전문가, 관계공무</p> 	<p>○관련 실무지침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및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람.</p>	자치 행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서
		<p>원등으로 구성하고 공무원과 외부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하였으나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p>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 부서
자치 행정과	정보화마을	<p>○월악산 약초 정보화마을 관리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마을은 설치보다 활용이 중요하므로 운영단체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 월악산 약초 정보화 마을이 설치된 복지회관의 화장실이 동절기에는 단열이 되지 않아 결빙으로 사용이 불가함으로 단열벽 설치 또는 난방등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동절기에도 사용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임. 	<p>○정보화마을 인터넷을 통하여 농특산품 우수판매자, 다량판매자들을 선 발하여 시상할 수 있는 방안등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요망</p> <p>○동절기에도 화장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p>	자치 행정과 (덕산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 부서
주민 지원과	오지개발사업	<p>○덕산면 성내리 교량가설공사 추진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산면 성내리에 가설중인 교량의 위치가 위,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교량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건설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항의성 민원이 발생하는 등 덕산면 성내리 교량가설공사 추진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음. 	<p>○인근 교량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 불평불만이 발생되고 있는 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p>	주민 지원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 부서
주민 지원과	오지개발공사	<p>○백운면 샛방아다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 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으로 방학리 샛방아다리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로 개거 : L=500M(800×800), 150백만원 - 농로포장 : L=300M, B=3M, 30백만원 	<p>○방학리 샛방아다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 가능 여부 및 향후 계획등을 백운면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p>	주민 지원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 서
주 민 지원과	오지개발공사	<p>○ 백운면 애련1리 마을안길 보완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6월에 준공된 애련1리 농로포장 공사 중 일부분은 주변 농경지보다 도로가 낮게 포장되어 있으며, 배수로 없이 농로가 포장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재정비 요망. 	<p>○ 배수로 설치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p>	주 민 지원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 서
홍 보 체육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p>○수산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관련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내부의 경기장 라 인선과 벽면과의 거리가 너무 좁게 설계되어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경기장을 이용하는 관람 객 및 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p>○향후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시 여유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설계 에 반영하여 추진 하시 기 바람.</p>	홍 보 체육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 서
북 지 사업과	보훈회관건립	<p>○제천보훈회관건립 추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을 건립코저 청전동 505-14번지에 부지 295평, 연건평 360평(지상 4층), 사업비 1,700백만원(국비 7억, 도비 4.5억, 시비 5.5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계획등에 일관성 없이 추진하므로 사업추진의 적절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당초 업무보고에는 사업비 1,800백만원(국비 14억, 도비 3억, 자담 1억)으로 시비 부담 없이 계획을 추진코자 하였으며,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500백만원을 '06년에 700백만원, '07년에 800백만원으로 하는등 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됨 	<p>○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비부담등을 고려하고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 등 관련법규를 이행하여 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건립중인 보훈회관에 대해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본래의 목적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p>	북 지 사업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 서																																					
세정과	결손처분	<p>○결손처분 과다발생</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구분 년도</th> <th colspan="2">결손총액</th> <th>채납처분</th> <th>채납처분</th> <th>행 불</th> <th rowspan="2">시효소멸</th> <th rowspan="2">부분결손</th> </tr> <tr> <th>건 수</th> <th>금 액</th> <th>종결</th> <th>중지</th> <th>무재산</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259</td> <td>1,054,380</td> <td>92,705</td> <td>-</td> <td>528,049</td> <td>12,863</td> <td>420,763</td> </tr> <tr> <td>2004</td> <td>910</td> <td>484,032</td> <td>64,953</td> <td>-</td> <td>408,855</td> <td>10,224</td> <td>-</td> </tr> <tr> <td>2005</td> <td>349</td> <td>570,348</td> <td>27,752</td> <td>-</td> <td>119,194</td> <td>2,639</td> <td>420,763</td> </tr> </tbody> </table> <p>•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결손처분으로 징수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 채납자관리를 소홀히하여 매년 4~5억 정도씩 과다하게 결손처분을 하므로 세수가 결손되고 있음.</p>	구분 년도	결손총액		채납처분	채납처분	행 불	시효소멸	부분결손	건 수	금 액	종결	중지	무재산	계	1,259	1,054,380	92,705	-	528,049	12,863	420,763	2004	910	484,032	64,953	-	408,855	10,224	-	2005	349	570,348	27,752	-	119,194	2,639	420,763	<p>○채납자에 대한 독촉 또는 납입최고, 교부청구, 압류, 납세추적관리등 관리를 철저히하여 결손처분 대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30조의2에 의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 징수권을 확보하기 바람.</p>	세정과
구분 년도	결손총액			채납처분	채납처분	행 불	시효소멸	부분결손																																	
	건 수	금 액	종결	중지	무재산																																				
계	1,259	1,054,380	92,705	-	528,049	12,863	420,763																																		
2004	910	484,032	64,953	-	408,855	10,224	-																																		
2005	349	570,348	27,752	-	119,194	2,639	420,76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 부서										
세정과	자금관리	<p>○일반예금 잔고 과다보유 (‘04. 11. 1 ~ 12. 30. 52일간)</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50억이상</td> <td>30억이상</td> <td>20억이상</td> <td>10억이상</td> <td>10억이하</td> </tr> <tr> <td>6일</td> <td>9일</td> <td>14일</td> <td>18일</td> <td>5일</td> </tr> </table> <p>• ‘04. 11. 1.~12. 31.까지 공금잔액을 살펴보면 20억이상 소유일이 52일중 29일이 되는등 공금을 이자소득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 신종적립신탁,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예금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자수입 증대에 배치되게 관리하고 있음.</p>	50억이상	30억이상	20억이상	10억이상	10억이하	6일	9일	14일	18일	5일	<p>○자금수요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일반예금 잔고를 최소화 하고 이율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 신종적립신탁,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세정과
50억이상	30억이상	20억이상	10억이상	10억이하										
6일	9일	14일	18일	5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서
회계과	불량업체관리	<p>○부실시공(납품) 불량업체에 대한 패널티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지연(2~5일) 하자발생등 33개 부실시공·불량업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사례는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만 배제하고 있어, 일반 수의견적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패널티 적용이 필요함. 	<p>○부실시공, 불량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패널티적용을 강화(수의견적 입찰참여 배제등)하고 우수업체 실적기준등을 마련 인센티브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회계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 서
보건소	노인전문요양병원	<p>○노인전문병원 사업추진 소홀</p> <p>•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 치료, 요양등을 위하여 9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3,600백만원(도비 1,800, 도비 708, 시비 1,012)을 확보하고(건축비 3,152백만원, 장비구입비 448백만원) 대상지를 공모하였으며, 사업개요에 따라 04.5.2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p> <p>1. 사업개요</p> <p>가. 위탁운영자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토지를 제천시에 기부채납</p> <p>부지위치 : 제천시 행정구역내</p> <p>부지면적 : 연건평 900평이상 건물신축이 가능한 1,000평이상(대형버스 통행이 가능한 진입도로 별도 확보)</p> </div>	<p>○시비부담이 당초계획 수립시보다 6억원 이상 추가 소요되는 만큼 좋은 환경의 내부시설, 기자재, 의료장비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공사등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장비 구입시는 전문가로 하여금 검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회계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서
		<p>의료법인 응포의료재단과 전문병원 신축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후 장비비 748,000천원(당초 448,000천원), 농지조성비 39,900천원, 상수도시설비 253,000천원, 전기인입공사비 27,940천원 등 추가예산이 계속 증가되어 당초계획보다 629,765천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시비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당초부터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p> <p>부지선정시 진입로 조건이나 대지 조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진입로 개설비, 농지조성비, 상수도시설비등의 추가 비용을 줄일수 있었을 것임.</p>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처 리 부 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청풍하키장	<p>○청풍하키장 관리 및 하자보수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풍하키장의 본부석 크랙으로 인하여 지하 락카롬 누수발생, 텍스 접착불량으로 인한 탈착, 벽면 크랙발생(미장부분) 등의 하자가 계속적(매년)으로 발생되고 있음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어야 할 것임 -본부석 크랙으로 인한 지하 락카롬 누수발생 및 텍스 접착불량으로 인한 탈착 -벽면 크랙 발생(미장부분) 	<p>○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설계, 감리, 감독부문등 전 부문에 걸쳐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아 하자보수 기간내에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기바람.</p>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 부서
문화체육시설 관리소	조례운영	<p>○솔밭수영장 관리조례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림지 솔밭수영장의 이용률 저하 및 노후화로 수영장 기능을 상실하여 2003. 3. 12일 용도폐지 하였음에도 솔밭수영장 관리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한 다음에 조례폐지 절차를 이행하는등 솔밭수영장 관리조례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p>○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람.</p>	문화체육시설 관리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소관부서	사업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처리부서
시립 도서관	의병도서관	<p>○의병도서관 기능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병창의 고장으로서 의병정신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의병관련 연구 및 의병전문도서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5억(국비 6억, 도비 12억, 시비 17억)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62평의 의병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실별 배치계획에 의하면 의병관련 전용면적은 2층 3실 68.39평으로 기존 시립도서관의 의병자료실 45평보다 30평정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의병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할 것임. 	<p>○국도비를 지원받아 전국 유일의 의병특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목적에 맞도록 의병도서외에도 의병자료실, 의병연구실, 의병전시실, 의병체험관등 도서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병도서관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재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람.</p>	시립 도서관

사업소·읍면동 감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 총 15 건 -

사업소 ·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

대상	구분	지적·건의사항	조치요구	처리부서
수산면	지적사항	<p>○홀로노인 생일떡 전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로노인 생일떡 전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으니 시예산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p>○홀로노인 생일떡 전달사업 예산이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통보하시기 바람.</p>	복지사업과
수산면 백운면	지적사항	<p>○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현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월 36만원 정도로 충주나 제천에서 출강하는 강사에게는 부족한 실정으로 별도의 교통비 지급등을 통하여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p>○읍면에 출강하는 강사에게는 교통수당 별도지급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람.</p>	주민지원과
수산면	건의사항	<p>○마을 공동축사 신축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면은 노령인구가 28%정도로 노인들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댐지원사업비등을 통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춘 마을 공동축사를 신축하여 주시기 바람. 	<p>○댐지원사업비로 마을공동축사 신축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수산면에 통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p>	기획감사실

사업소·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

대상	구분	지적·건의사항	조치요구	처리부서
수산면	건의사항	<p>○청사주차장 확장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의 증가로 주차장이 협소하니 면사무소 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p>○추경예산 또는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가능 여부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수 산면에 통보하여 주시고 그 결 과를 제출하시기 바람.</p>	기 획 감사실
수산면	지적사항	<p>○수산면 노인정 관리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면 노인정 벽면에 크랙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으니 보수 또는 노인정 신 축 방안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p>○노인정 보수계획 또는 신축계 획등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쾌 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지 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북 지 사업과
교 동	권고사항	<p>○특수시책 추진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무소앞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들에게 새벽에도 운동기구를 대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시기 바람. 소화기 위탁판매에 따른 역기능에 대 하여 검토요망 	<p>○체육공원에 운동기구를 무인 으로 설치하는 방법등 다각 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하기 바라며, 소화기 위탁판 매는 주민 또는 상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느니 재검 토 시행하시기 바람.</p>	교 동

사업소 ·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

대상	구분	지적·건의사항	조치요구	처리부서
중앙의림명동	건의사항	<p>○도시계획변경 및 소방도로 개설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림초교뒤 골목길은 사도로서 맹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재산권 행사 및 생활불편 초래, 도시계획정비를 통한 소방도로개설요망 	○소방도로 개설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의림명동에 통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개발과 (기획감사실)
중앙의림명동	지적사항	<p>○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관리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직원 인력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청소 및 물품준비 등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청소 및 준비물관리 등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하기 바람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람	중앙의림명동
보건소	건의사항	<p>○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날로 증가하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으니 인력을 충원하여 주시기 바람. 	○인력진단등을 통하여 인력충원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	자치행정과

사업소·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

대 상	구 분	지적·건의사항	조치요구	처 리 부 서
보건소	건의사항	<p>○보건소 청사 증축요망</p> <p>• 여건변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등으로 청사가 협소하니 증축하여 주시기 바람.</p>	<p>○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축가능 여부를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p>	회계과
보건소	건의사항	<p>○노트북 예산지원요망</p> <p>• 현지 출장업무가 대부분인 방문보건팀에 노트북 및 빔프로젝트가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으니 예산지원 요망</p>	<p>○추경 예산에 반영가능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p>	기 획 감사실
의 병 도서관	권고사항	<p>○도서관상징 조형물 건립 검토</p> <p>• 각종 건축물 신축시 건축물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의병도서관도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람.</p>	<p>○의병도서관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관련실과와 신중히 검토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p>	시 립 도서관

사업소 ·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

대상	구분	지적·건의사항	조치요구	처리부서
시립 도서관	건의사항	<p>○의병도서관 운영시 인력지원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4월경 준공예정인 의병도서관은 현 인원으로 2개의 도서관 관리는 어려우니 인력을 보강하여 주기 바람 	<p>○인력진단등을 통하여 의병도서관 준공 운영시 인력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시립도서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p>	자치 행정과
전통의약산업 센터	건의사항	<p>○전통의약산업센터 인건비 및 장비운영비 지원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구입비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장비운영비 및 연구원 인건비가 부족함으로 전통의약산업센터의 자립시까지 시에서 예산 지원요망 	<p>○시에서 예산지원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p>	투자 통상실
청소년 문화센터	건의사항	<p>○자전거 거치대 설치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 분실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자전거 거치대 설치요망 	<p>○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p>	복지 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

- 총 1 건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

소관부서	사업명	우수사례	비고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시설 지도 (감사) 감독철저 이행	<p>○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천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근무상황부 관리, 종합일지 작성, 자금관리, 지출서류작성, 도서구입, 카드 사용방법 교육등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아닌 세밀하고 실질적인 업무지도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추진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음.</p>	

4. 행정사항

- 본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사업소·읍면동 감사사항등에 대하여 제천시는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라며,
- 제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결과(계획)을 2006. 2. 28일까지 의회로 서면 제출하되,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음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